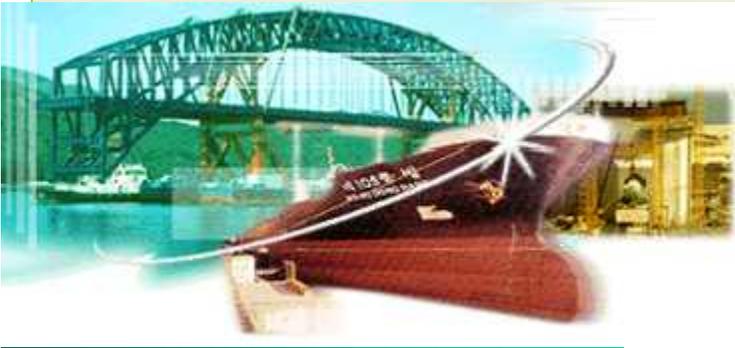


CISG 제1편 제1조~제13조



유 하상

UN물품매매협약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조-제13조]



1. 비엔나 협약의 제정배경과 목적

3

I. CISG의 의의

■ CISG의 제정배경과 과정

❖ 제정배경

- 국제통일매매법의 필요성
 - 각국 무역매매법의 다양성과 차이 (Conflict of Laws)
 - ⇒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해석 및 분쟁해결의 어려움
 - ⇒ 국제물품매매에 적용할 통일법 제정 필요

❖ 제정과정

- UNIDROIT의 draft on Sale (1956/1963) -> UNIDROIT의 ULIS(1964)
 - ⇒ UNCITRAL 산하의 W/G의 Draft Convention on Sale (1976)
 - ⇒ UNCITRAL의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CIS, 1977)
- UNIDROIT의 Draft on Formation (1958) -> UNIDROIT의 ULF (1964)
 - ⇒ UNCITRAL 산하의 W/G의 Draft Convention on Formation (1977)
 - ⇒ UNCITRAL의 Draft Convention on Formation of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CF, 1978)

1. 비엔나 협약의 제정배경과 목적

4

I. CISG의 의의

■ CISG의 제정배경과 벌효과정

❖ 상기 두 규범을 결합하여,

– UNCITRAL의 Draft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CCISG, June 1978)

⇒ UN International Trade Law Branch의 기능을 하는 사무국 (The Secretariat)의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UN총회 상정

⇒ 1980 Diplomatic Conference의 First Committee에서 Principal Substantive Provisions인 Article 1~88을 Second Committee에서 Final Provisions인 Article 89~101을 각각 제정

⇒ 본회의 상정 및 투표 ⇒ CISG 제정

✓ **UNDROIT** : 사법통일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UNCITRAL** :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 비엔나 협약의 제정배경과 목적

5

I. CISG의 의의

■ CISG의 제정배경과 발효과정

❖ CISG의 발효과정

- 1980년 Austria Vienna 외교회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UNCCISG: Vienna Convention)」 채택
- 서방국가, 사회주의국가, 제3세계 = 62개국 참석, 6개국의 공용어(영어, 중국어, 아라비아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완성
- 협약 99조 1항 (10번째 협약국이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익월 초일에 발효한다) 에 의하여, 미국(9번째), 중국(10번째), 이탈리아(11번째)가 1986년 12월 11일에 차례로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1988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2004년 한국 가입 -> 2005년 3월 발효
- 2008년 12월 현재 협약비준 or 가입국 = 72개국

1. 비엔나 협약의 제정배경과 목적

6

I. CISG의 의의

■ CISG의 제정의 목적(PICC 전문을 중심으로)

❖ **PICC** : 국제상사계약원칙,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 법의 일반원칙과 상관습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원칙 포괄
- 국제거래상 상인간에 적용의 용이
-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의 일반원칙, 상관습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경우 해석원칙으로 적용가능
- 상기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어 국제상거래에 유일한 준거법으로 역할
- 본 원칙은 다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국제상업계약을 위한 종합적 성격을 띤 준거법

1.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1980. 4.11 채택

- 현재 체약국 65개국(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 영국, 일본은 미가입
- 한국은 2004.2.17 가입신청, 2005.3.1부터 효력발생

1. 비엔나 협약의 제정배경과 목적

7

I. CISG의 의의

■ CISG의 제정의 목적(PICC 전문을 중심으로)

❖ PICC 목적 (전문)

- ① 국제상업계약을 위한 일반원칙의 설명
- ② 국제상업계약 체결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에 적용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적용될 준거법 제정
- ③ 국제상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에 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상관습법(lex mercatoria)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이 적용될 것을 합의한 때에 적용될 준거법 제정
- ④ 국제상업계약과 관련한 준거법원칙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될 때 제기될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준거법 제정
- ⑤ 국제상업계약과 관련한 국제통일법을 해석하거나 보완하는 간격 메우는 법(gap-filling law) 제정
- ⑥ 매매에 관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표준모형 제정

2. 비엔나 협약의 기능과 구성

8

I. CISG의 의의

■ 협약의 기능

- 국가의 비준을 전제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자동집행적 조약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 제공

■ 협약의 구성

- 적용범위 및 총칙 (1조-6조)
- 해석원칙 (7조-13조)
- 계약의 성립 (14조-24조)
- 물품에 관한 일반규정 (25조-65조)
- 위험의 이전 (66조-70조)
-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 (71조-88조)
- 기타 (89조-101조)

3. 비엔나 협약의 특징

■ 일반적 특징

- 영미법과 대륙법의 적절한 조화
- 소비자용 매매계약 적용 배제
- 불법거래에 관한 계약 무효에 관한 국내법 인정
- 당사자간 협약 적용 배제 허용
- 당사자간 계약내용과 협약규정간 상호 충돌시 계약내용 우선 ⇒ 당사자자치의 원칙

■ 입법과정상 특징

- | | |
|-------------|-------------------------|
| ① 포괄적인 법체계 | ⑤ 소유권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 ② 국제매매의 적용 | ⑥ 위험부담 별개 |
| ③ 당사자자치의 원칙 | ⑦ 계약유지의 원칙 |
| ④ 당사자 불문 | ⑧ 고의·과실 여부 무관 |

CISG 목차

제1편 적용범위 및 총칙

제1장 적용범위

- 제1조 적용의 기본원칙
- 제2조 협약의 적용제외
- 제3조 특정계약의 제외
- 제4조 적용범위
- 제5조 사망 등의 적용제외
- 제6조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제2장 총칙

- 제7조 협약의 해석원칙
- 제8조 당사자 진술이나 행위 해석
- 제9조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
- 제10조 영업소의 정의
- 제11조 계약의 형식
- 제12조 계약형식의 국내요건
- 제13조 서면의 정의

제2편 계약의 성립

- 제14조 청약의 기준
- 제15조 청약의 효력발생
- 제16조 청약의 취소
- 제17조 청약의 거절
- 제18조 승낙의 시기 및 방법
- 제19조 변경된 승낙의 효력
- 제20조 승낙기간의 해석
- 제21조 지연된 승낙
- 제22조 승낙의 철회
- 제23조 계약의 성립시기
- 제24조 도달의 정의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 총칙

- 제25조 본질적 위반의 정의
- 제26조 계약해제의 통지
- 제27조 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 제28조 특정이행과 국내법
- 제29조 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류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30조 매도인의 의무요약

제1절 물품의 인도 및 서류의 교부

- 제31조 인도의 장소
- 제32조 선적수배의 의무
- 제33조 인도의 시기
- 제34조 서류인도의무

제2절 물품의 일치성 및 제3자 청구권

- 제35조 물품의 계약 적합성
- 제36조 일치성의 결정시점
- 제37조 인도만기 전의 보완권
- 제38조 물품의 검사기간
- 제39조 불일치의 통지시기
- 제40조 매도인의 악의
- 제41조 제3자의 청구권
- 제42조 제3자의 지적소유권
- 제43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
- 제44조 통지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제45조 매수인의 구제방법
- 제46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제47조 이행부가기간의 통지
- 제48조 인도기일 후의 보완
-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제50조 대금의 감액
- 제51조 물품일부의 불일치
- 제52조 기일 전의 인도 및 초과수량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53조 매수인의 의무요약

제1절 대금의 지급

- 제54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 제55조 대금이 불확정된 계약
- 제56조 순증량에 의한 결정
- 제57조 대금지급의 장소
-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 제59조 대금지급시기

제2절 인도의 수령

제60조 인도수령의 의무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제61조 매도인의 구제방법
- 제62조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 제63조 이행추가기간의 통지
-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제65조 물품명세의 확정권

제4장 위험의 이전

- 제66조 위험부담의 일반원칙
- 제67조 운송조항부 계약품의 위험
- 제68조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
- 제69조 기타 경우의 위험
- 제70조 매도인의 계약위반시의 위험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1절 이행기일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 제71조 이행의 정지
- 제72조 이행기일 전의 계약해제
- 제73조 분할이행계약의 해제

제2절 손해배상액

- 제74조 손해배상액산정의 원칙
- 제75조 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 제76조 시가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 제77조 손해경감의 의무

제3절 이자

제78조 연체금액의 이자

제4절 면책

-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 제80조 자신의 귀책사유와 계약불이행

제5절 해제의 효과

- 제81조 계약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 제82조 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제83조 기타의 구제방법
- 제84조 이익의 반환

제6절 물품의 보존

- 제85조 매도인의 보존의무
- 제86조 매수인의 보존의무
- 제87조 제3자 창고에의 기탁
- 제88조 물품의 매각

제4편 최종규정

- 제89조 협약의 수탁자
- 제90조 타협정과의 관계
- 제91조 서명과 협약의 채택
- 제92조 일부규정의 채택
- 제93조 연방국가의 채택
- 제94조 관련법이 있는 국가의 채택
- 제95조 제1조 제1항 b호의 배제
- 제96조 계약형식요건의 유보
- 제97조 협약에 관한 선언절차
- 제98조 유보의 금지
- 제99조 협약의 발효
- 제100조 계약에 대한 적용일
- 제101조 협약의 폐기

■ 국제매매에만 적용

❖ 국제계약에서 ‘국제’ 의 개념(CISG 제1조 제1항)

-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진 당사자
- 물품이 거래되는 장소나 협상이 진행되는 장소는 관련이 없음
 - 가)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이한 국가에 자신의营业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 나) 한 개 이상의 영업장소를 두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또는 그 이전에 당사자가 예상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계약의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을 그 영업장소로 한다」

■ 계약국과 관계가 있는 거래에만 적용

국제매매는 거래가 1개국 이상의 협약국가와의 협약상에 명시된 관계를 가질 경우에만 협약의 적용대상이 됨을 제1조 [a][b]에서 규정.

- (a) 양당사자들이 속한 국가가 모두 협약국인 경우(자동으로 적용, 직접적용)
- (b) 양당사자가 모두 비협약국이거나 한 당사자만 협약국인 경우 적용이 배제됨, 단,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이 계약국 법인 경우, CISG 적용가능(간접적용)

■ CISG 적용범위

1. 장소적 적용범위(제1조)

1) 제1조(적용범위)

2. 상황적 적용범위(제2조-제5조)

1) 제2조(협약의 적용제외)

2) 제3조(특정계약의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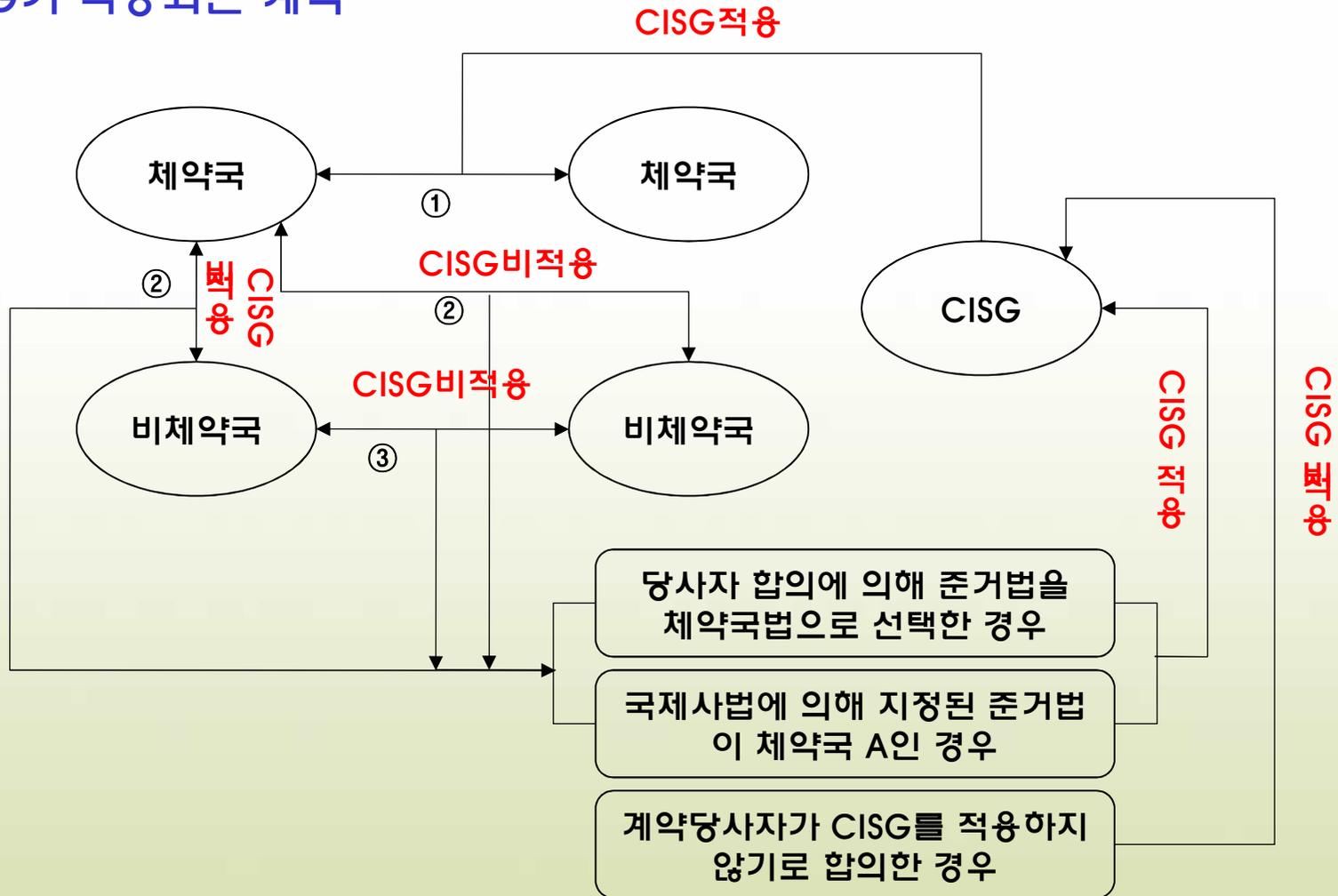
3) 제4조(적용범위)

4) 제5조(사망 등의 적용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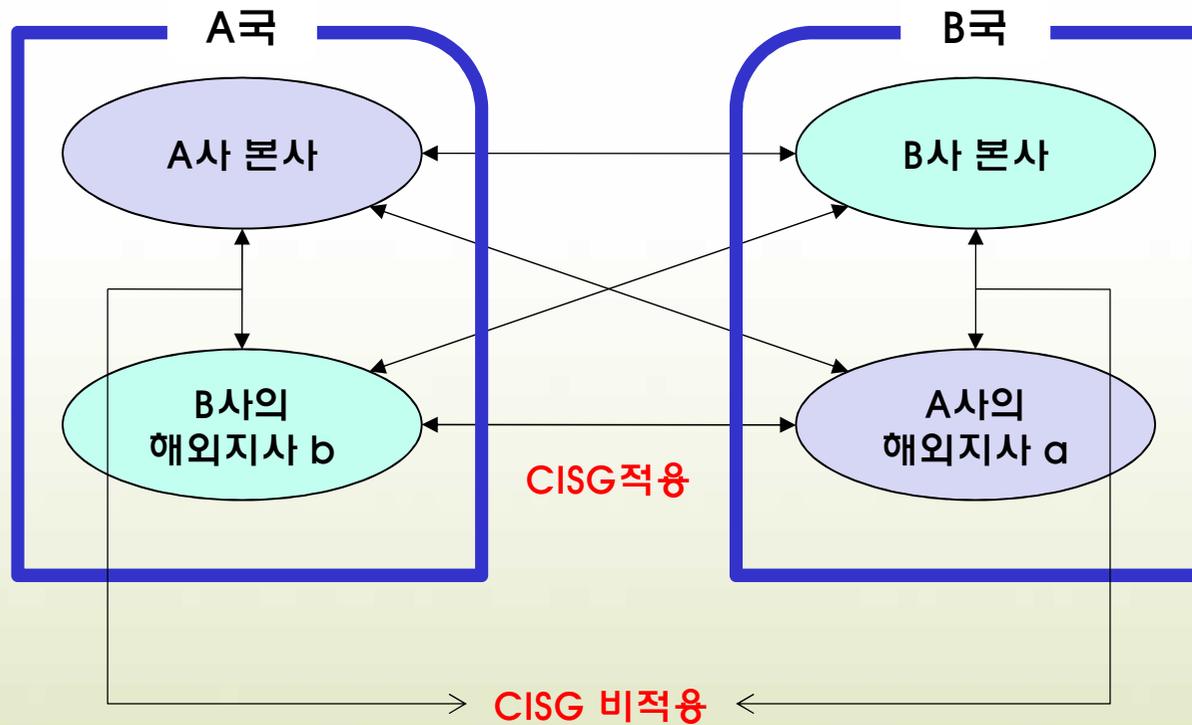
3. 시간적 적용범위(제100조)

1) 제100조(계약에 대한 적용일) : CISG는 제1조에 의해 CISG가 적용될 수 있는 날 이후에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졌거나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적용된다.

CISG가 적용되는 계약



CISG가 적용되는 국제계약



- 1. 당사자의 국적은 무시
- 2. 계약체결시/전 까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가 있을 것

■ 적용 대상인 물품(제1조)과 그 예외(제2조)

이 협약은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제1조 제1항)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2조)

(a)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의 체결전 또는 그 당시에 물품이 그러한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것도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동산매매에 한정
- 소비자 거주지역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국제매매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님
국내매매는 각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종의 강행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CISG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배제시키는 것임

(b) **경매에 의한 매매,**

- 경매에 의한 매매의 경우 낙찰된 후까지도 매수인이 누가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c) **강제집행** 또는 기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매매(파산절차 등),

- 이는 매도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강제적으로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적용 대상인 물품(제1조)과 그 예외(제2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2조)

(d)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주식 등은 실물 자체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선화증권이나 창고증권 같은 인도증권에 의한 매매는 실물 자체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CISG의 적용대상이 된다.

(e) 선박, 부선, 수상익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 (f) 전기의 매매 등.

- 선박 등은 국가마다 상이한 등록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CISG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 다만 CISG는 운송수단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포츠형의 소형요트나 소형비행기에 대한 매매에서는 CISG가 적용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부품이나 부속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e) 전기

- 전기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가마다 특별한 매매조건을 부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 다만 원유, 가스, 원자력에너지인 우라늄 등에는 적용될 수 있다.

CISG가 적용되는 물품/적용되지 않는 물품

CISG 적용물품

유체물

동산

CISG 비적용물품

개인용/가족용

경매물품

강제집행/법률매매

주식/지분/증권/통화

선박/부선/소선/항공기

전력공급

■ 제조물품의 공급계약과 서비스 공급(제3조)

- (1) 물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 주문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재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현실적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주문에 응해서 제조된 경우도 그것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하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임.
 - 그러나 주문자가 「제조나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상당부분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물품인도 의무보다도 가공을 위한 용역제공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매매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 중에서 **대부분이 노동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물품의 인도 의무가 포함된 계약이라도 노무 등 용역제공이 대부분(50% 이상)인 계약은 물품매매로 볼 수 없으므로 비엔나 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물품매매만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
 - 리스계약은 CISG 비적용 대상이지만, 리스사업자와 매도인 간의 리스물품 매매계약은 CISG 적용 대상임

CISG가 적용되는 계약/ 적용되지 않는 특정계약

CISG 적용계약

매도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매매계약

매도인이 조달한 재료로 생산/제조한 물품의 공급계약

매수인이 제조/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실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경우

매수인이 단지 노하우만을 제공한 경우

CISG 비적용계약

물품과 노무 및 기타 서비스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분리가능/2개의 계약인 경우)

물품과 노무 및 기타 서비스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서 노무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분리가능 /2개의 계약인 경우)

물품과 노무 및 기타 서비스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서 노무 및 서비스를 공급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분리가능하지 않아 1개의 계약이 되는 경우)

■ CISG가 적용되는 규율대상(제4조)

이 협약은 단지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규율 한다.

- 적용대상: ① 계약의 성립 ② 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③ 계약의 해석(제8조) ④ 계약의 종료와 내용변경(제9조)

이 협약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관계되지 아니한다.

- (a) 계약 또는 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나 어떠한 관행의 유효성,
- (b) 매각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칠 수 있는 효과

- 불적용대상

- ① 계약의 유효성 여부(권리능력 및 행위능력문제, 강행법규 위반, 공서 양속 위반의 문제 등은 국내법이 판단할 문제이며, 각국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곤란하기 때문)
- ② 계약의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

CISG 적용범위

CISG 적용

계약으로부터 발행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석/계약의 종료/계약의 내용변경

CISG 비적용

계약 및 관행의 유효성 문제

물품의 소유권

제조물책임(P/L)

착오와 관련된 문제

■ 제조물 책임의 적용배제(제5조)

이 협약은 「매매의 목적물로 인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제조물 책임(P/L) 관하여는 국내법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

■ 당사자 자치원칙에 의한 적용배제(제6조)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12조에 따라 이 협약의 어느 규정에 관해서는 그 효력을 배제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

- 협약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그러나 CISG는 당사자의 적용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임
- “본 계약은 CISG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국법이 적용된다.”
- CISG의 적용요건(장소적, 시간적, 사항적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CISG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 CISG적용을 합의할 수 있다.

CISG 적용배제

CISG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CISG의 적용 또는 배제/내용변경을 할 수 있다.
CISG적용요건(장소적, 시간적, 사항적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CISG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적용배제 합의

일반적으로 계약시 합의

사후적 합의도 가능

명시적 배제

“이 계약에 CISG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계약에 CISG는 적용되지 않고 한국법이 적용된다.”

묵시적 배제

묵시적 배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해야 한다.

예컨대 CISG에 대한 명시적 배제 없이 비체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

다만,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이 체약국의 법인 경우에는 명시적 배제가 없는 한 CISG가 적용된다.

제2장 총칙

제7조 협약의 해석원칙

■ 신의성실 원칙(제7조 제1항)

(1)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그 적용상의 통일성의 증진을 위한 필요성 및 국제무역상의 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국제무역거래에서의 신의성실의 준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너무 성급하게 국내 법규 및 법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일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의존하여 협약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임.

제2장 총칙

제7조 협약의 해석원칙

■ 법률홈결의 보충(제7조 제2항)

(2)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 CISG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를 보충하는 원칙에 관한 규정임.
- CISG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는 협약이 근거를 두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그러한 원칙이 없는 때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 조항도 7조 (1)항과 같이 국내법·판례·관습에 의존하지 않고 협약자체의 해석을 구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흔히 제시되는 일반원칙

- 당사자 의사의 우선(제6조),
- 신의칙(제7조), 관행의 존중(제9조),
- 의사표시나 행태의 객관적 해석(제8조),
- 방식의 자유(제11조), 계약유지의 우선(제47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63조, 제64조),
- 신뢰보호(제16조 제2항, 제29조 제2항),
- 입증 원칙(제79조 제1항) 등이다.

제2장 총칙

제8조 당사자의 진술이나 행위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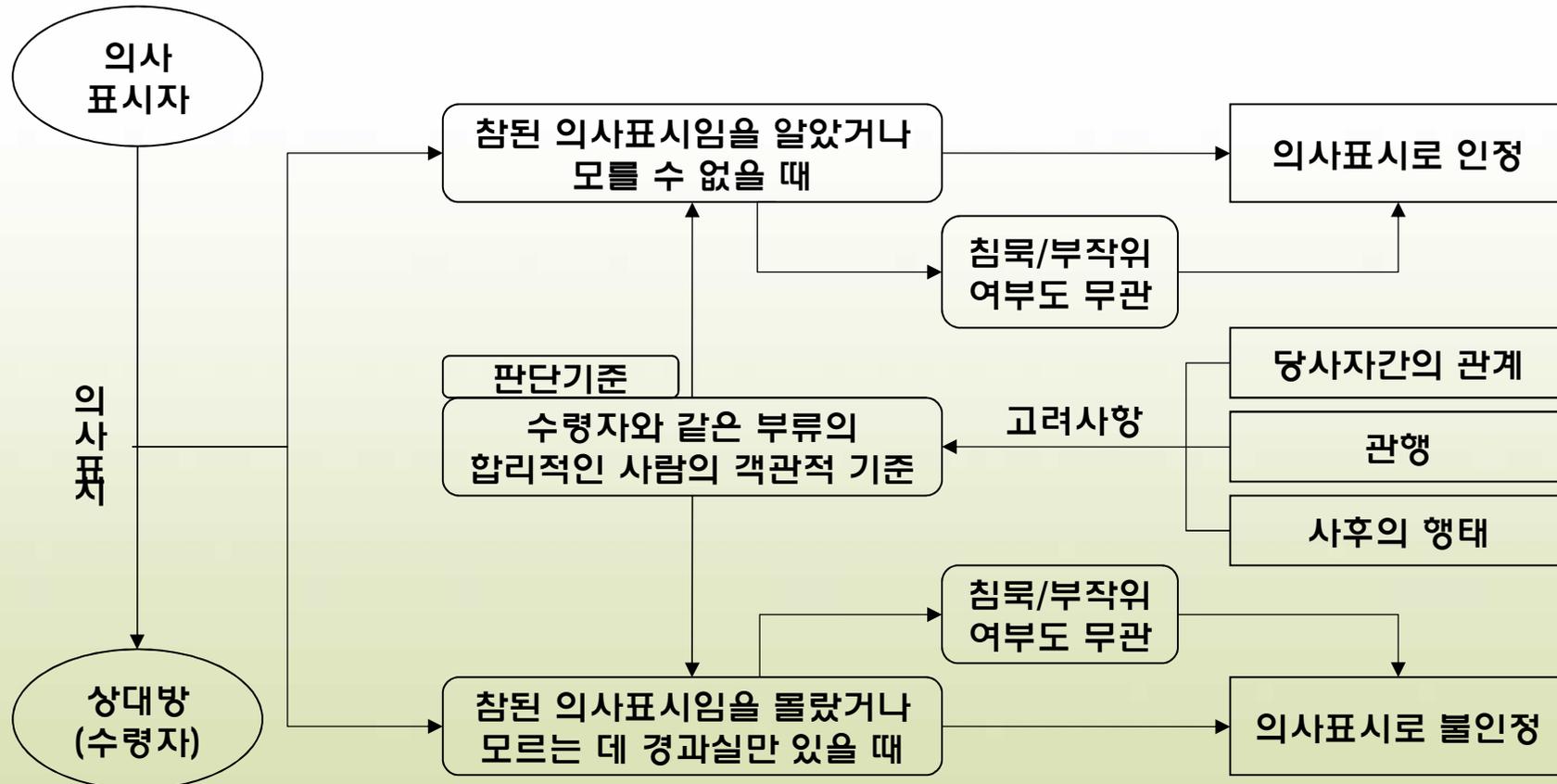
■ 당사자 의도 우선의 원칙(제8조)

- (1)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주관적 의사)**
 - 계약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가 바랬던 효과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
- (2) 전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과 같은 종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사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객관적 의사)**
 - 합리적 인간의 기준을 따른다. 계약내용상 당사자의 「진술이나 기타의 행위」 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과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본 계약이 체결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해했을 내용이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로 해석된다.
-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당사자간에 확립되어 있는 관습,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되는 어떠한 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의 관련된 사정에 대한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의 교섭,**
 - 해석 시 고려사항 : 교섭과정, 당사자간의 관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2장 총칙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시자의 사실적 의사가 우선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의사가 정해지지 않으면 개관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를 정할 때의 고려요소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 조항임



제2장 총칙

제9조 관습이나 관행의 구속력

■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제9조)

(1)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모든 관행 (usage)과 당사자간에서 확립되어 있는 모든 관례(practice)에 구속된다. (관행과 관례의 효과를 구분하여 규정)

- 흔히 관행(usage)이란 일정한 분야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관련된 거래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준수되는 거래형태를 말함
- 관례(practice)란 일반적이 아니라 오로지 당사자들간에만 규칙적으로 준수되는 행태양식을 말함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관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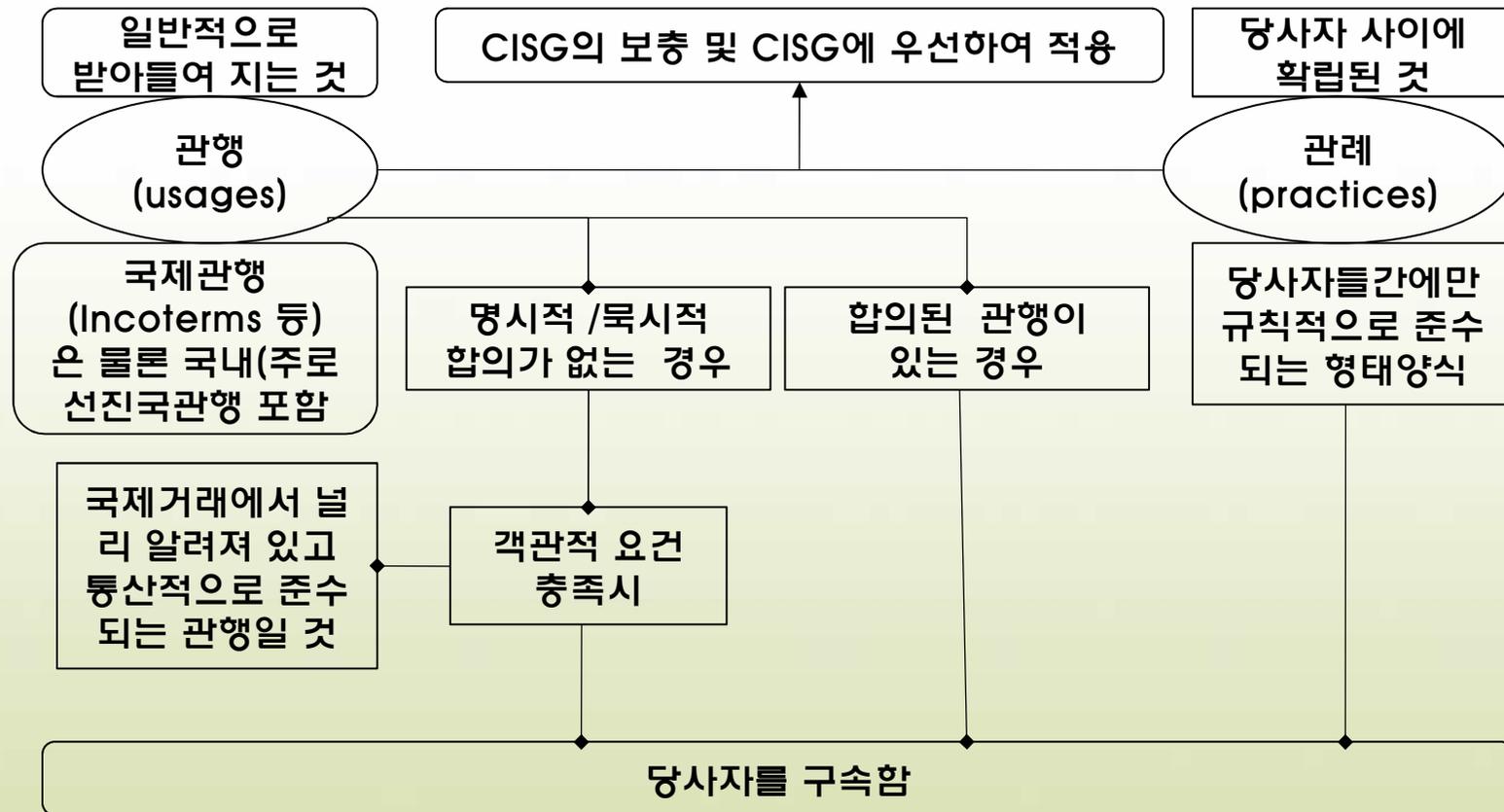
- 먼저 합의된 관행은 당사자들을 구속함(명시적은 물론 묵시적 합의도 인정됨)
- 합의된 관례 역시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관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당사자들간에 동일한 행태가 이의 없이 반복되었어야 한다.
- 합의되지 않은 관행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국제거래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는 관행일 것, 국내거래상의 관행은 배제됨. 다만 국제거래상의 관행이라면 특정지역의 장소적 관행이라도 상관없음(예컨대 상품거래소, 항구 등에서 통용되는 관행)
 - ✓ 그러한 관행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제2장 총칙

제9조 관습이나 관행의 구속력

관행과 관례(제9조)

관행(usages)과 관례(practices)가 언제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가를 정하는 규정



제2장 총칙

제10조 영업소의 정의

■ 영업소의 정의(제10조)

이 협약의 적용상

(가)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영업소로 된다.

(나)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주적인 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① 복수영업소인 경우: 계약 및 이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업장소

- 다국적 기업의 경우 계약의 교섭과 체결은 A국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이행은 B국에서 행하여진 경우 「계약과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 라는 기준을 근거로 그 계약과 관련 짓기 어려움 -> 「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이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지거나 또는 그들이 고려한 상황을 고려」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② 무점포일 경우: 상주적인 거소 (인터넷을 통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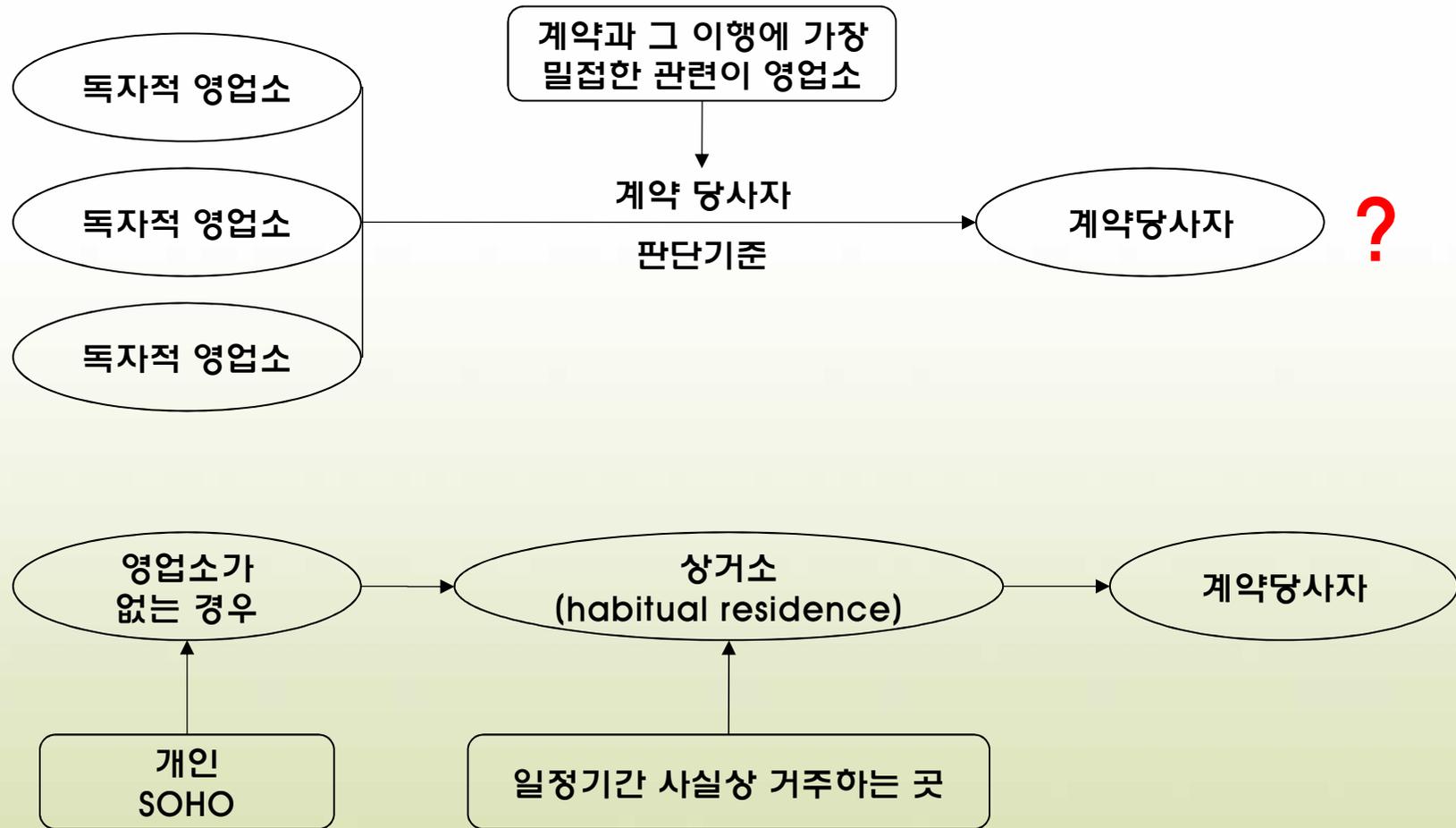
- 당사자가 한 개의 영업장소도 없어 당사자가 영업장소 밖에서 어느 행위를 한 경우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나 국제거래에서 영업장소를 갖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는 흔지 않아 단지 법률상의 구제조항으로 제정된 것.

- 상거소(habitual residence) : 일정기간 사실상 거주하는 곳

제2장 총칙

제10조 영업소의 정의

영업소가 여러 개이거나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를 정하는 기준



제2장 총칙

■ 계약의 형식(성립) 및 입증수단(제11조)

-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형식에 관해서도 어떠한 다른 요건에 따라야 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
 - ① 매매계약은 서면, 구두 가능 ⇨ 계약형식 자유의 원칙
 - ② 매매형식에 관한 기타 요건 필요 없음 ⇨ 합의
 - ③ 매매계약의 존재 자체와 그 내용을 입증하는 방법도 제한 없음(구두, 증인, 가타 등)

매매계약 방식의 자유

이 규정은 계약 형식 자유원칙을 정하고 있다. 즉 CISG상 계약은 서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국내법상 계약에 서면을 요구하는 국가가 이 규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96조의 유보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은 서면에 의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제2장 총칙

■ 계약형식에 관한 국내요건을 유보하려는 협약국의 선언[제12조]

- 매매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또는 모든 청약, 승낙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형식으로 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 협약의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부의 모든 규정은 어느 당사자가 이 협약의 제96조에 의거한 선언을 행한 계약국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본 조의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국제물품계약은 언제든지 서면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소련의 입장)
- ② 서면계약은 모든 경우가 아닌 특수한 경우에 의무적이어야 한다.(미국의 입장)
- ③ 매매법이 의무적으로 서면서식을 조금이라도 요구해서도 강요해서도 안 된다.(모든 국가)

유보선언의 효과

이 규정은 제96조 유보선언의 효과를 정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적인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CISG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면 그들 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 당사자의 어느 하나가 제96조의 유보선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방식자유의 원칙이 배제된다. 이때에 바로 법정지국이나 유보선언국의 방식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에 따라 해결된다. 따라서 준거법이 유보국의 법이 되면 그 국내법이 방식규정이 적용되며, 방식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면 결과적으로 방식의 자유가 인정된다.

■ 서면의 정의의 확대(제13조)

이 협약의 적용상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가 포함된다.

-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도 포함됨
- 그 외에도 팩스, EDI 등도 서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서면의 정의

이 규정은 서면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다만 전보와 텔렉스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으로 보아 서명날인은 요구하지 않으나 지면상으로 나타난 것이면 서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Fax, EDI 등도 서면에 포함된다고 본다,



감사합니다